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단30813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7. 11. 30.

판결 선고2018. 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7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 부터 2017.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40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주문 제2의 나.항의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분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5. 7. 27. 및 같은 달 28. 원고와 사이에 육군군수사령부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는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회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2017. 1. 6.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3)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육군군수사령부에 합계 94,277,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4) 한편, 피고회사는 2017. 1.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7. 1. 12.) 이후인 2017. 2. 6. 성립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조만간 자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사해행위에 터잡아 이뤄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는 피고회사에 대한 2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5. 7. 27.과 같은 달 28.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회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대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7. 1. 6.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감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서부산농업협동조합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에 소재한 기계기구인데, 그 중 이 사건 1, 2 토지와 건물의 2016. 4. 29. 기준 시가는 합계 775,018,000원이고, 이 사건 3 토지 지분과 공장에 소재한 기계기구의 시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소극재산은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590,175,060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94,277,010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무 210,000,000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631,450,910원(= 전체 지급금액 725,727,920원 - 이 사건 보증보험금 94,277,010원, 비록 이 부분 각 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현실화되었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을 더한 1,525,902,9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3 토지 지분의 면적은 66㎡이고 ㎡당 공시지가는 2015. 1. 1.을 기준으로 74,900원인 점, 공장 건물에 있는 기계 기구의 종류 및 제작일자, 상태 등에 비추어 위 토지와 기계기구의 시가가 위 소극재산과 나머지 적극재산의 차액 750,884,980원(= 1,525,902,980원 - 775,018,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회사가 피고 C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 C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기초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 C가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2013년경부터 사업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B의 남편 D을 알게 되었고 163,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관계를 맺어 온 사이인 점, 피고 C는 2013년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후 3년 동안 담보 설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와 피고 C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40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형철

별지